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19가합373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한직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엽, 박동진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7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4. 18. 접수 제29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원금 357,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22.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D가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2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 조건을 변경하여 2017. 12. 15. 최종적으로 위 보증의 기한을 2018. 12. 14.로 연장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 체결일인 2010. 12. 22. D와 추가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22.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D가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 조건을 변경하여 2017. 12. 15. 최종적으로 위 보증의 기한을 2018. 12. 14.로 연장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6. 29.에도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원금 5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8.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D가 2012. 6.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보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 조건을 변경하여 2018. 6. 22. 최종적으로 위 보증의

기한을 2018. 12. 21.로 연장하여 주었다.

라.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미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기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기보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바. C은 2015. 8. 31.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0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 A은 2018. 4. 18. 모친인 피고 B에게 2016.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920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아. 피고 A은 2018. 5. 17. 소외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6341호로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D는 원고가 보증한 위 각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기한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오다가 2018. 7. 7. D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차. 원고는 2018. 8. 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각 대출의 보증인으로서 D가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합계 958,108,394원(= 이 사건 제1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360,030,255원 + 이 사건 제2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95,643,824원 + 이 사건 제3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502,434,3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각 보증의 연대보증인인 C이 향후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개연성이 높은 연대보증채무 등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A과 전득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A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7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발생 통보를 받은 날이나 적어도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한 날까지는 내부 규정들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C의 재산을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원고는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바, C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증여 당시에는 주채무자인 D가 전도유망한 건실한 기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점, 증여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8년경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대출이자 등을 연체한 적이 없는 점, 원고 역시 D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발생 통보를 받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무렵인 2018. 8. 6.경 원고의 직원이 C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8. 8. 6. 중소기업은행에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958,108,39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8. 8. 6. D 및 C에 대하여 958,108,394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의 피고 A에 대한 2015. 8. 31.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취득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앞서 든 증거, 을 제6, 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C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C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8. 31. 체결되었고, 원고가 D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8. 8. 6.이다.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보증의 주채무자인 D는 신용보증약정의 대상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2017. 7.경 한 차례 연체이자가 부과된 것 이외에는 최초 대출 실행일인 2010.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약정이자를 연체 없이 상환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도 2017년 말경까지는 계속하여 위 중소기업자금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므로 적어도 2017년 말경까지는 주채무자인 D에 대한 보증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③ 원고 역시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중소기업자금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 2보증에 대하여는 2017. 12. 15.경, 이 사건 제3보증에 대하여는 2018. 6. 22.경까지도 별다른 조건 없이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④ 주채무자인 D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년 결산일(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더욱이 D는 스피커와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2. 11.경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F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경에는 대기업과 스피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을 양산하는 등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적어도 2017. 7. 13. 실시된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해당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 운영되던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년 및 2016년경 D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가 단기간에 해제되었던 사정은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원고도 2016. 6. 24. 이 사건 각 보증의 주채무자인 D가 보유한 기술을 다수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평가하면서, 평가대상기술이 적용된 스피커 관련 부품 및 완제품이 2013년 하반기부터 일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므로 2015년까지 도입기를 거쳐 2016년~2018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고, D라는 회사 자체에 대하여도 21개의 등록 특허와 15건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평가대상기술의 사업화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김병휘, 판사 조현우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H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K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24층 아파트

1층 551.65㎡, 2층 547.57㎡

3층 내지 4층 각 638.37㎡

5층 내지 23층 각 635.57㎡

24층 269.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L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12.7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G 대 73883.9㎡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 대 7246.6㎡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3883.9 분의 45.209. 끝.

